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 
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 (금)  
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의영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10월 17일

(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조례 제명을 현행 「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·보완하여,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
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
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
- 용어정의 추가(안 제2조)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3조)
-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-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- 정보공개 신설(안 제8조)
-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신설(안 제9조)
- 만족도 조사 신설(안 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우수 식재료 사용과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 권장, 공동구매 활성화와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·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및 안전 관리가 향상되고, 학교급식 관련 정보 공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- 본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상호 소통하는 투명한 학교급식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

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,

-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본 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전달과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학교급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급식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.
3. “식재료공급업체”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성물질, 농약,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

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5. “안전한 식재료”란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말한다.
6. “정보공개”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수립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.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·시기·방법,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우수 식재료의 사용)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우수 식재료 사용 시, 충청북도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5조(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) ① 학교의 장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.

제6조(식재료검사)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

하여야 하며,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시, 이들의 의견이 감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감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제7조(공동구매 등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보공개)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급식 운영 계획(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지원, 위생 및 안전관리 등 포함)
2. 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
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
4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
5.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
6.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관련 사항
7.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
8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학교급식 게시판 운영)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만족도 조사)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

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 및 연수)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